

## ■ 최신 해외정보 - 중국 ■

**2017년부터 해외 NGO 관리법 시행**

2017년 1월 1일부터, 「경외비정부조직경내활동관리법」(이하 '해외 NGO 관리법')이 중국에서 정식 시행됩니다.

해외 NGO 관리법에 의하면 해외 NGO는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환경 보호, 빈곤 퇴치, 재난 구조 등과 관련하여 공익을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NGO는 중국 국내에서는 모금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 NGO 관리법에 의하면 해외 NGO가 중국에서 활동하기 위하여서는 대표기관을 설립하여야 하며 공안부서에 등기하여야 합니다. 임시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위 대표기관을 설립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 활동은 중국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간에 대하여서도 1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공안부서는 해외 NGO를 관리하는 부서로 법 시행에 맞춰 자세한 활동 영역 등을 정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 중에 있으며 또한 해당 법의 시행에 맞춰 NGO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과 인터넷 사이트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해외 NGO 관리법의 시행으로 중국 내에서는 해외 NGO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민반교육촉진법」 개정,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영리성 학교 설립 금지**

개정 「민반교육촉진법」이 지난 11월 7일에 통과되어, 내년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민반교육촉진법」에서는 9년 의무교육 단계에서 영리성 민반학교를 설립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 「민반교육촉진법」은 비영리성 민영교육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영리성 민영학교를 신축 또는 확장하는 경우,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토지를 무상 지원하는 토지사용 관련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 세제혜택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기업 관련 등기제도 개혁 가속화

중국 정부는 지난해 전국적으로 기업 등기와 관련하여 기존의 영업허가증, 조직기구코드증, 세무등기증을 통합하여 하나의 영업허가증으로 갈음하는 '3증합1(三證合一)' 개혁을 전면 시행한데 이어 올해 10월 1일에는 위 삼증합일에 추가하여 사회보험등기증과 통계등기증을 통합하는 개혁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개혁으로 기업 등기 절차는 한 부의 신청서류로 한 창구에서 일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로써 기업 등기를 위한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